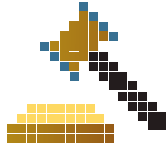




범죄혐의 중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추후보도 및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방송사 및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24개 매체는 경찰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모 사회적 기업이 유통기한이 최대 2년이 지난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고 각종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판 사실이 없으며, 보조금법 위반 및 장애인고용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보도 쟁점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쟁점으로 정리하여 각 언론사에 사전조정안을 제시했고, 17개 매체는 조정기일 전 추후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해 사건이 취하됐으며, 2개 매체는 추후보도 쟁점만을 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7개 매체는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워 추후보도 쟁점만을 방송하는 내용으로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했다.

‘폭리’는 주관적인 평가로서 정정보도 대상 아니지만, 반론보도문 게재로 합의

C방송은 신청인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오토 캠핑리조트가 성수기 숙박요금을 평소보다 최대 두 배 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지자체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 ‘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준 및 근거 없이 요금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폭리”는 주관적인 평가이고, 보도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적정요금에 대한 부분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숙박요금의 근거에 관한 신청인 지자체의 입장을 반론보도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유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법원 판결문을 잘못 해석한 보도,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A 인터넷 매체는 B 언론사 소속 기자 해고 무효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면서, B 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해고할 당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해당 기사가 트위터 글을 게시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B 언론사는, 해당 기자 해고 통지 당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해고 통지에 해고 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으며, 트위터 글 게시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취재기자가 오해했다고 판단, 판결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보도 게재를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범죄혐의 보도한 전문지, 무혐의 처분 인지 후 추후보도

산업 관련 전문지 D는 신청인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뒤 산업부 신기술 인증을 받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몇몇 공기업과 해당 제품을 비싼 가격으로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이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는데, 피신청인은 고소인이 검찰 처분에 항고할 수 있고, 신청인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자칫 추후보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 뒤 결과에 따라 보도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청인은 조정대상 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추후보도가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추후보도청구는 법률로 정해진 권리인 만큼 피신청인이 추후보도를 게재하되,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사법기관의 절차가 모두 종결한 후 결과에 따라 자유롭게 후속보도를 하는 선에서 합의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중재부 권유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